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7일, 유용원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4.9.)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1차 국방위원회(2026.4.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용원의원)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현행은 범죄구성요건에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둘째,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로 인한 국가적 이익 침해 내지 국

가안보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범죄예방적 효과가 낮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셋째, 2025년 1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의 법정형을 상향하였는데,¹⁾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의 경우에도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못지않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유사하게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반면 현행 법정형 규정은 2025년 6월 4일 개정·시행되고 있는데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종전의 ‘2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이미 강화한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①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2025. 1. 21.>

②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4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5. 1. 21.>

방위산업기술의 국외유출에 따른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정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결과

없 음

[붙임]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0억원”을 “6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벌칙) ① <u>방위산업기술을</u> <u>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u> <u>할 목적으로</u> 제10조제1호·제2 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사람은 <u>1년</u>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u>20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1조(벌칙) ① <u>방위산업기술이</u> <u>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u> ----- ----- ----- <u>3년</u> ----- ----- <u>65억원</u> -----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